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3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관광진흥법」 개정(2024.10.22.)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의 특성과 관광 여건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관광진흥법」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8조)
- 나. 부칙에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(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)
- 다.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 관광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함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창의를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
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6. 5. ~ 6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임지연 (☎ 2133-2827)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「관광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출자·출연하여”를 “출자·출연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촉진하기 위한”을 “촉진할 수 있는”으로, “노력한다”를 “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 중 “여건개선”을 “여건 개선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관광발전”을 “관광 발전”으로, “심사하거나”를 “심사하는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관광특구 시설기준)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
관광안내시설,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9조제3항 중 “다음연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7호 중 “관광 상품”을 “관광상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
항 중 “공유 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으로, “30이내”를 “30 이내”로 하며, 같은
조 제4항 중 “공유 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3제2항 중 “등과 관련”을 “등에 관하여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 및 별표의
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
용한다.

■ [별표]

서울특별시 관광특구 시설요건 세부기준(제8조 관련)

시설 구분	종류	구비기준
1. 공공편의시설	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, 공영주차장	가.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.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다.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만 포함
2. 관광안내시설	관광안내소, 관광지 표지판	가.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.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
3. 숙박시설	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가족호텔, 호스텔, 소형호텔, 의료관광호텔, 휴양콘도미니엄	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
4. 휴양·오락시설	민속촌, 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, 온천장, 수영장,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, 산림휴양시설, 박물관, 미술관, 야영장, 관광유람선, 한옥체험시설, 종합유원시설	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유원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
5. 접객시설	관광공연장, 관광유흥음식점, 관광극장유흥업점,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, 관광식당, 관광지원서비스시설, 국제회의시설	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 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
6. 상가시설	기념품판매점, 백화점, 전통시장, 면세점,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	하나 이상일 것

<비고>

위 표의 시설은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,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</u> 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 ·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관광진흥법</u> 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서울특별시</u>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· 2. (생 략) 3. “관광진흥기관”이란 <u>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· 운영되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가 투자 또는 출자 · 출연하여</u> 설립 ·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 4. ~ 8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이 ^란 ----- ----- 출 ^자 · 출연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--.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을 <u>촉진하기 위한</u> 관광정책을 수립 · 시행하고,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<u>노력한다</u> . ② ~ ④ (생 략)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촉진할 수 있는</u> ----- ----- <u>노력하여</u> 야 한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관광진흥종합계획) ① (생 략)	제6조(관광진흥종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5. (생략)

6.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
7. ~ 10. (생략)

③ (생략)

제7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시장은 국제 관광 촉진과 시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8조 (생략)

제9조(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)

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, 수행능력,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

② -----

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여건 개선-----

7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-----
----- 관광 발전-----

----- 심사하는 등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관광특구 시설기준)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8조의2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제9조(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리·점검하여야 하며, 관리·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15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7. 관광 상품 개발

8. ~ 14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

----- 다음 연도 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재정지원) ①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관광상품 ---

8. ~ 1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공유재산 ----- 30
이내-----.

④ ----- 공유재산-----

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제16조의3(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, 가입절차, 회비 등과 <u>관련</u>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	제16조의3(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등에 관하여</u>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「관광진흥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의 특성과 관광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임지연(02-2133-2827)